

사 천 시

공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



선 람	기 관 의 장

제565호 2018. 07. 20.(목)

고 시

- 사천시 고시 제127호 공유수면 점용·사용 허가사항 고시-----2

회 람										
--------	--	--	--	--	--	--	--	--	--	--

발행 : 사천시 / 편집 : 공보감사담당관 / ☎ 831-2217 / FAX 831-6012

사 천 시 공 보

제565호(2)

고 시

사천시 고시 제2018 - 127호

공유수면 점용·사용 허가사항 고시

「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」 제8조제6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9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유수면 점용·사용 허가사항을 고시합니다.

2018. 07. 19.

사 천 시 장

1. 점용·사용 허가번호 : 제2018 - 03호
2. 점용·사용 허가 연월일 : 2018년 7월 18일
3. 점용·사용의 목적
 - 새우양식장 해수 인입을 위한 급수 및 배수관로 설치
4. 점용·사용의 장소
 - 경남 사천시 서포면 비토리 119-76, 119-101번지선 공유수면
5. 점용·사용의 면적 : 0.9㎡
6. 점용·사용의 기간 : 2018년 7월 18일 ~ 2028년 7월 17일(10년)

사 천 시 공 보

제565호(3)

7. 점용·사용 허가를 받은 자의 성명·주소

가. 성 명 : 최 종 명

나. 주 소 : 경남 고성군 삼산면 공룡로 2976

8. 점용·사용의 허가조건 : 붙임 참조

사 천 시 공 보

제565호(4)

허 가 조 건

1. 허가목적 준수 : 피허가자는 허가목적을 성실히 준수하여야 하며 허가목적과 다르게 공유수면을 점용.사용할 수 없습니다.
2. 허가내용 변경 시 사전 변경허가 : 피허가자가 면적, 기간 등 본 허가내용을 변경하여 점용.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.
3. 본 허가 관련 해역이용협의 및 해양오염방지 대책 이행 등
 - 가. 시설물 운용 시 해양환경영향 저감 방안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합니다.
 - 나. 해수 급수 및 배수관 운영과 관련하여 타 법령에서 규정하는 사항이 있을 경우 반드시 이행하여야 하며, 발생하는 해수에 대한 수질오염 저감 대책을 수립·시행하여야 합니다.
 - 다. 해수 급수 및 배수관의 노후 및 관리소홀 등으로 인한 해양오염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기적으로 점검·보수하여야 하며, 시설물 및 주변해역을 주기적으로 청소하여 깨끗한 해양환경을 유지하여야 합니다.
 - 라. 해수 급수 및 배수관을 교체 등으로 폐기할 경우 적법한 절차에 따라 수거.처리하여야 합니다.
 - 마. 동 시설물 운용과 관련한 해역이용 이해당사자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, 문제 제기 시 적극적인 해결 대책을 강구하여야 합니다.
4. 지시사항 준수 및 이행 : 타 법령에 의한 신고 및 인.허가 사항 등에 관하여는 별도로 관련 법령에 의한 인.허가 등의 절차를 거쳐야하며, 타 법령이 정하는 준수사항 등은 철저히 이행하여야 합니다.
5. 시설물의 관리
 - 가. 설치구조물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안전대책 등 안전사고에 대비한 대책을 철저히 점검.시행하여야 하며,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합니다.

사 천 시 공 보

제 565호(5)

- 나. 설치구조물의 파손이 있을 경우 피허가자의 부담으로 시설보수, 안전대책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합니다.
- 다. 시설물 주변 경관 및 미관을 저해하지 않도록 시설물을 관리하여야 합니다.

6. 허가사항 취소 또는 행정처분

- 가. 공유수면관리법령과 허가조건 및 관련 법령에 의한 관리청의 지시사항을 위반한 때 또는 장래 산업단지 지정 및 공유수면 매립 등을 위한 국가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리청은 본 허가를 취소하거나 필요한 행정처분을 할 수 있고, 이 처분으로 인해 피허가자가 입는 손실 및 손해에 대하여는 관리청에게 일절 보상이나 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.
- 나. 공공 또는 공익사업 등 관리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기간연장 사용허가신청을 불허가할 수 있으며, 불허가 처분에 따른 원상회복 명령이나 관리청의 지시에 대하여 피허가자는 일체의 보상이나 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.

7. 공유수면의 원상회복 : 본 허가기간이 만료되거나 점용·사용이 폐지된 경우 또는 허가가 취소된 때에는 공유수면에 설치된 공작물을 제거하고 당해 공유수면을 피허가자 스스로의 부담으로 원상회복하여야 하며, 동 사업과 관련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합니다.

8. 허가 기간 만료시 연장신청 등 : 허가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경우에는 그 기간 만료일의 60일 전부터 30일 전까지 관련법령에 따른 적합한 서류를 구비하여 변경허가(기간연장) 신청하여야 합니다.

9. 민원 해결 등

- 가. 동 공유수면 점용·사용으로 인하여 어업권자 등 권리자에게 피해를 주거나 민원사항 등이 발생 할 경우 피허가자가 보상 또는 민원을 전담하여 해결하여야 합니다.
- 나. 어업피해, 안전사고, 공사과정 중 소음, 먼지 등으로 인한 각종 민원발생 시 전적으로 피허가자가 책임을 지고 적극적으로 해결해야 하며, 해결이 되지 않을 시 공유수면 점용·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.

10. 허가조건 이행 : 위 허가조건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피허가자는 본

사 천 시 공 보

제565호(6)

허가증을 받은 후 20일 이내에 이의제기를 할 수 있으며, 동 기간 중 이의 제기를 하지 않으면 본 허가조건에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하겠습니다. 끝.